

의안번호	2217570
의 퇴 인	박홍배의원
회 답 일	2026.3.24.
추 계 번호	26B1604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의5 (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)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<u>기후변화와 산업발전 등으로 인하여 하천·호소 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(제1항)</u>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9조의5(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와 산업발전 등으로 인하여 하천·호소 등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등으로, 관찰물질 지정 및 조사를 위한 인력·장비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2026년 3월 기준, 「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」 사업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은 하천·호소 등에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관찰물질 총 103종을 지정하고, 4대강 주요 지점에서 수질측정센터를 통해 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며, 해당 사업의 예산은 78억 700만 원임¹⁾

－ 참고로, 관찰물질의 지정 및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는 「물환경보전법」 제9조의5이며²⁾, 해당 조항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임

1) 산업용 60종(과불화화합물 38종, 기타 22종), 농약류 24종, 의약품 19종

-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에 따르면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로서 미생물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따라 해당 물질 조사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 - 특히 개정안 시행 시, 국립환경과학원·유역(지방)환경청 및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 및 장비 확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□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지정될 관찰물질의 규모 및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현시점에서 해당 사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- 2) 제9조의5(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·호소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찰물질의 명칭, 지정 이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찰물질의 지정·조사와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[참고자료] 수질측정센터 건립 및 운영 개요

(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)

□ (설치) 수질측정센터를 낙동강(왜관, 매리)에 이어 영산강(~'25), 금강(~'26) 및 한강 유역(~'27)에도 순차적으로 설치

□ (운영) 4대강 주요지점*에서 사회적·국제적 관심물질**(농·화학·의약품 질 등)에 대해 정기적 정밀 측정***

* (주요지점) 본류 4지점, (기타지점) 공공하·폐수, 대규모 사업장 등 고려하여 선정

** 국외 모니터링 물질(US EPA UCMR, EU Watch list 등)을 참조하여 각 수계에 맞게 선정

*** 미국 EPA 먹는물 기준 중 가장 정밀한 기준(PFOA, PFOS 4.0ng/L) 이내로 분석 가능하도록 정량한계 고도화(1ng/L 수준)

□ (건립 및 운영 개요)

구 분		운영 중		확대 예정		
		낙동강(왜관)	낙동강(매리)	영산강	금강	한강
수계면적 (대상면적, km²)		15,607	8,040	3,468	9,810	26,018
위 치		경북 칠곡군	경남 김해시	광주시	충북 옥천군	경기 양평군
규 모		대지 1,488㎡, 연면적 653.1㎡ (지하 1층, 지상 2층)	대지 2,033㎡, 연면적 984㎡ (지하 1층, 지상 2층)	대지 10,000㎡, 연면적 768㎡ (지상 3층)	대지 10,016㎡, 연면적 999㎡ (지상 3층)	미정
준공연도 (또는 계획)		'17년	'22년	'25년	'26년(예정)	'27년(예정)
				6~12개월 시범운영 후 본격 운영		
측정지점/주기 (운영 또는 계획)		4지점/ 주 1~월 1회	4지점/ 주 1~월 1회	4지점/ 주 1~월 1회	4지점/ 주 1~월 1회	4지점/ 주 1~월 1회
측정장비 /항목		GC-MSMS, LC-MSMS 등 7종 /103종		GC-MSMS, LC-MSMS 등 7종 /103종		
소요 예산	건축	45억원	64억원	77억원	82억원	130억원
	운영	6.3억원/연	4.8억원/연	6.3억원/연	6.3억원/연	6.3억원/연
운영인력		연구관1 연구사2	연구사1	연구사1 (협의 중)	직제 협의 중	